

# 셀프스튜디오(P/M) 설비 이용 규정

## 1. 셀프스튜디오 이용 신청 및 이용 시간

### [ 셀프스튜디오-P ]

- ① 설비이용시간은 월~목요일은 오전(09:00~11:30), 오후1(13:30~15:00), 오후2(15:00~17:00) 3개 시간대로 운영하며, 금요일은 설비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휴관한다. 한 업체당 하루 2개 시간대까지 이용 가능하며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.
- ② 설비이용 신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(이하 '지방청')이 선착순으로 승인하며, 동 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횟수나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< 셀프스튜디오-P 신청기간 및 이용시간 >

| 구 분  | 내 용   |
|------|---|
| 신청기간 | 매월 선착순 접수, 익월 예약은 당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가능<br>(예약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이 끝난 다음날 또는 별도 날짜 공지) |
| 이용시간 | 업체당 월 5일, 주 2일(일 1~2개 시간대) 이용 가능  |

### [ 셀프스튜디오-M ]

- ① 설비 이용시간은 월~목요일 10:00~17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까지 운영하며, 금요일은 설비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휴관한다. 하루 한 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며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.
- ② 설비이용 신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(이하 '지방청')이 선착순으로 승인하며, 동 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횟수나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< 셀프스튜디오-M 신청기간 및 이용시간 >

| 구 분  | 내 용   |
|------|---|
| 신청기간 | 매월 선착순 접수, 익월 예약은 당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가능<br>(예약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이 끝난 다음날 또는 별도 날짜 공지) |
| 이용시간 | 업체당 월 4일, 주 2일 이용 가능  |

## 2. 설비이용 관련 주의사항

- ① 설비이용자는 지방청이 부여하는 주의의무에 충실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
- ② 설비이용자는 사용 허가된 지방청 재산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.
- ③ 설비이용자는 설비이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·도난·화재·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중「중소기업청의 시험·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의거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 3. 운영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

- ① 지방청은 원활한 설비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「중소기업청의 시험·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에 의거하여 그 이용을 일시 또는 영구 중지시킬 수 있다.

< 셀프스튜디오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내용 >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조치사항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예약당일 시간변경<br>(30분 이상 지각 등) | 5회              | 6개월간 이용 중지 |    |
| 예약당일 취소 · 미사용              | 2회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파손·훼손                      | 고의 또는 과실로 2회 위반 | 1년간 이용 중지  |    |
| 도난 또는 화재                   | 고의 또는 과실로 1회 위반 | 영구 이용 중지   |    |

\* 위반 회수는 매년 1월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 됨  
(예 : 현 2023년 1월 → 2020년 1월~2022년 12월 내용 적용, 2019년 12월 이전 내용 소멸)